

회 의 록

회 의 명	2016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2016. 5. 12(목) 10:00 ~ 10:50
장 소	본관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조승국 기획처장(부총장) ○ 위 원 : 이승로(교수협의회장), 김신용(직장협의회장), 이주현(총학생회 회장), 김소정(부총학생회장), 최진수(한국능력협회), 김현철(공인회계사)
불 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 지영근(대학원원우회장)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② 2015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 심의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p>□ 조승국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류대현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p> <p>[안건1]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p> <p>○ 조승국 위원장은 ‘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합산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계산서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0,793,099,186원으로 최종추경 예산액 40,881,183,000원에 대비하여 99.78% 집행됨. -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감한 금액으로 교비회계 합산 411,86,978원(등록금회계 177,719,250원, 비등록금회계 233,567,728원)을 차기 이월하기로 함. - 운영계산서 결산액은 총 41,882,235,382원으로 보고함. 이 중 기본금대체액은 2,047,683,371원, 운영차액대체액은 835,732,120원으로 당기운영차액(운영수익-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운영차액대체액)이 -3,591,865,862으로 보고함. -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계는 128,444,796,791원으로 전기 대비 3,312,207,911원 감소하였으며, 부채와 기본금은 각각 11,147,415,230원과 117,297,381,561원으로 전기 대비 부채는 932,293,300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금은 2,379,914,611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에 계속</p>

앞장에서 이어짐.

- 조승국 위원장은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는 것을 제안함.
- 참석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

[안건2] 2015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 심의

- 조승국 위원장은 ‘15회계연도 교비회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참석위원의 심의를 요청함

- 2015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

- ① 한세비전 2020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추진사업에 예산 배정
- ② 학생만족도 결과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
- ③ 기타 학생 직접교육비 등 교육비환원 사업에 예산 배정

-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의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에 동의함.

위원장의 폐회 선언 및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앞장에서 이어짐)

2016. 5. 1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위원장	<u>조승국</u>	(인)
위원	<u>이승도</u>	(인)
위원	<u>이주헌</u>	(인)
위원	<u>개신응</u>	credit
위원	<u>김소정</u>	(인)
위원	<u>김현철</u>	(인) 김현철
위원	<u>최민우</u>	(인)
위원		(인)

끝.

2016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 일 시 : 2016. 5. 12(목) 10:00
- 장 소 : 본관 8층 대회의실
- 안 건 : ①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② 2015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 심의



【안건1】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1.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요약

[별첨] 자료

2.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요약

[별첨] 자료

3.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요약

[별첨] 자료

【안건2】 2015결산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 심의

1. 이월금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당해연도 미사용차기이월 자금은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함

2.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

☑ 이월 구분

구분	의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사용하는 자금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기타이월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 2015결산 이월금 처리 기준(안)

- 교비회계 예산 집행 후 발생한 이월금(잉여금)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로 활용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함
- ① 한세비전 2020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추진사업에 예산 배정
- ② 학생만족도 결과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
- ③ 기타 학생 직접교육비 등 교육비환원 사업에 예산 배정